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시험관리 수탁기관이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요양보호사 컴퓨터 상시시험 시행('23)에 따라 합격자의 경우 즉시 자격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자격증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

아울러,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양성교육이 원활히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예외적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달리 운영 가능토록 명시(안 제2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의2)
-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험관리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1항)
- 다.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의9제2항)
- 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시·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안 제29조의9제4항)
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명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9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제29조의3에 따른 시험관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의9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은”으로,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의9제3항 중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를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한 시·도지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의9제4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급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재발급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등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운

영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의3, 제20호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생략>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생략>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생략>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 3)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발령 등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발급 재발급	30일 7일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급)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장

(재발급) 시·도지사 귀하

신규발급 첨부서류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수수료 신규: 10,000원 재발급: 2,000원
재발급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습니다)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육기관명	교육과정종류

2. 현장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주소	연락처

* 시설종류는 “시설” 또는 “재가”를 말합니다.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합격여부		평가점수(평균)			
비 고		실습지도자		—(자필서명)	
		실습기관장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위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실습시설(기관)의 장

직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 ----- ----- ----- ----- ----- ----- ----- - <u>이 경우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제29조의3에 따른 시험관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는</u>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u>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② <u>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은</u> ----- ----- <u>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u> ----- -----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시험관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한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이 경우 발급의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
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재발급의 경우

1. ~ 2. (생략)	<u>에는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	---